

제308회 임시회
2012. 4. 25.(수)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행정문화위원회

「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2012. 4. 25.(수)
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정지숙 의원 외 6명

나. 발의일자 : 2012년 4월 9일

다. 회부일자 : 2012년 4월 10일

라. 상정일자 : 2012년 4월 18일

(제3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 : 정지숙 의원)

가. 제안이유

「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」는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의 「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」을 근거하여 전문 해설 인력을 육성 및 관리하여 법적 근거없이 자율적으로 운영 하였으나, 2011년 4월 5일에 개정된 「관광진흥법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에 문화관광해설사 제도가 도입되고, 2012년 1월 2 일 “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·활용에 고 시”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 및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「관광진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문화·관광분야의 전문 해설인력으로 전문성과 자긍심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개념을 삭제
- 전문적이고 질 높은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고 선발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선발 제도의 명확화
- 관광안내서비스 인력으로서 전문성과 자긍심 강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 확대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

3. 검토보고 요지

(행정문화전문위원 : 연병호)

금번 개정조례안은 2011년 4월 5일 개정된 「관광진흥법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문화관광해설사 제도가 도입되고, 2012년 1월 2일 “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·활용에 고시”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 및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으로,

안 제2조에서 자원봉사자 개념을 삭제하고,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전문적이고 질 높은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선발제도의 명확하게 규정하고, 안 제10조에서는 관광안내서비스 인력으로서 전문성과 자긍심 강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 확대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

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제고하기 위하여”를 “높이고자”로, “자원봉사자로서”를 “사람으로”로, “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과 수습기간을 거쳐 선발된 사람”을 “정해진 절차를 거쳐 선발한 사람”으로 한다.

제5조와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선발) ① 도지사는 국민을 대상으로 역사·문화·예술·자연 등 관광 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, 3개월 이상의 실무 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

제6조(해설인력의 역량 강화)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자질향상과 해설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선진 문화관광지 견학과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소지하고”를 “지니고”로 한다.

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,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포상)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및 단체·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문화관광해설사”란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, 체험기회를 <u>제고</u>하기 위하여 역사·문화·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<u>자원봉사자</u>로서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과 수습기간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문화관광해설사”란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, 체험기회를 <u>높이고자</u> 역사·문화·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<u>사람</u>으로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<u>정해진 절차</u>를 거쳐 선발한 사람을 말한다.</p>
<p>제5조(교육 및 평가) ① 도지사는 양성된 해설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설서비스의 제공자로서 갖추어야 될 심화된 표현기술 및 기획을 갖출 수 있도록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과정과 새로운 해설 인력의 확보를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.</p>	<p>제5조(선발) ① 도지사는 국민을 대상으로 역사·문화·예술·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,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</p>

<p>제6조(현장수습 과정 운영)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서 합격한 사람에 대해 문화관광해설사로서의 실제 해설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장 수습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.</p>	<p>제6조(해설인력의 능력제고)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자질향상과 해설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선진 문화관광지 견학과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.</p>
<p>제7조(표식) ① (생략) 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.</p>	<p>제7조(표식) ① (생략) 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지니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.</p>
<p>신설</p>	<p>제10조(포상)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및 단체·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.</p>
<p>제10조(시행규칙) (생략)</p>	<p>제11조(시행규칙) (현행과 같음)</p>
<p>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	<p>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

관계법령 발췌

□ 관광진흥법

제2조(정의)

12. "문화관광해설사"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,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·문화·예술·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.

제48조의6(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) 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(開設)·운영하려는 자는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의 인증(認證)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교육시간·교육과목·교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.

제48조의8(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역사·문화·예술·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,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

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④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,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□ 관광진흥법 시행규칙

- 제57조의5(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활용)**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인원, 평가 일시 및 장소, 응시원서 접수기간, 그 밖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7의4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선발계획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의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이론 및 실습 평가항목 각각 7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각각의 평가항목의 비중을 곱한 점수가 고득점자인 사람의 순으로 선발한다.
-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·활용하려는 경우에 해당 지역의 관광객 규모와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및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,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실적 및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⑤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,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재정수반 요인

○ 문화관광해설사의 선진지 견학과 우수 해설사 포상(제8조, 제10조)

본 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자질향상과 해설능력 향상을 위한 선진 문화관광지 견학(안 제5조)과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·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(안 제10조).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(1) 개정조례안 제5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자질향상과 해설능력 제고를 위한 선진 문화관광지 견학비는 타 시·도의 견학 프로그램을 기초로 하여 추계하고자 한다.
- (2) 개정조례안 제10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의 공적 포상비는 현재 우리 도의 문화관광해설 인력과 조직 규모 등을 기초로 하여 추계하고자 한다.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(1) 개정조례안 제5조에 따른 선진 문화관광지 견학비는 충청남도 40백만원(해설사 154명), 경상남도 20백만원(해설사 205명), 전라남도 45백만원(해설사 197명)을 지원하는 것을 감안 할 때, 우리도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인력 174명 기준으로 매년 30여명을 선진 문화관광지 비교답사 프로그램을 운영시, 매년 2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.

(2) 개정조례안 제10조에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·개인 등에 대한 포상은 우리 도의 문화관광해설사 174명 12개 시장·군수 등 관련 기관(단체) 및 개인 등을 고려할 때, 매년 1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.

4. 부대의견

없 음.

5. 작성자

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보흠(220-5031)